

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(이하“학회”라 한다)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는 정관과 직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분)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.

제 2 장 위원회의 설치

제4조(상임위원회) 상임위원회는 학회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일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기획·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상설기구로서 기획운영위원회, 재정위원회, 학술정보위원회, 국제교류위원회, 기술정보위원회, 편찬출판위원회, 연구위원회,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.(2010. 04. 15 개정)

제5조(전문위원회) 전문위원회는 농공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연구 발전과 회원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리고 학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비 상설기구로서 농지조성, 관개배수, 구조 및 재료, 농어촌정비, 농업시설, 수공, 지역 환경, 지반공학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특별위원회) 회장은 학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(2010. 04. 15 개정)

제 3 장 위원회의 기능

제8조(기획운영위원회)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미래 비전 제시 및 실행계획 수립
2.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
3.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결산
4.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5. 여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(2010. 04. 15 개정)

제9조(재정위원회)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및 실행
 2. 년도 별 단기 재원 발굴 및 재정확보 대책 수립 실행
 3. 기타 학회재정 안정화를 위한 관련 업무
 4. 회원의 신규가입 추진, 회비징수, 주소 및 신분변동사항 등 제반 인적관리
- (2010. 04. 15 개정)

제10조(학술정보위원회)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술발표회, 심포지엄, 세미나 등의 계획수립 및 실행
2. 학술교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
3. 관련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·협력
4. 농공학 교육인증 관련 업무

제10조의 1(국제교류위원회)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논과 물 환경 국제학회(PAWEES) 관련 국제심포지엄, 국제회의 등의 계획 수립 및 실행
2. 논과 물 환경 학술지(PWE) 편집, 발간
3. PAWEES 관련 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·협력
4. 여타 외국 기관 및 학회 등과의 교류협력(2010. 04. 15 개정)

제11조(기술정보위원회) 기술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농공 신기술자료 수집 및 보급
2. 기술자 실무 교육
3. 학회지, 연구논문 및 기술 자료의 D/B 구축
4. 학회 Home page 구축 및 관리
5. 기술교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
6.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통괄(2010. 04. 15 개정)

제12조(편찬출판위원회) 편찬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논문집 및 학회지의 편집 발간(2010. 04. 15 개정)
2. 농공학 전문도서의 출판
3. 연보 및 회원명부 발간

4. 기타 논문 및 간행물의 편집·출판

제13조(연구위원회)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시행
2. 연구용역 사업 수탁
3. 실행중인 연구용역 사업의 관리 및 평가 점검
4. 전문위원회 연구사업 지원

제13조의 1(대외협력위원회)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2010. 04. 15 신설)

1.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
2. 산·학 관련 협조

제14조(분야별 전문위원회)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문분야별 학술 및 기술의 연구
2. 전문분야별 자문 및 지도
3. 연구용역 수행

제 4 장 위원회의 구성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 인원)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(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) ①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
②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17조(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)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입회 결의에 의하여 선발한다.

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출 및 선발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한다.

제18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
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호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두지 아니하며 탈퇴 또는 2년간 위원회 활동이 없으면 제명한다.

제19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)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그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위원회 활동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학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위원회의 운영

제20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21조(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22조(위원회의 의사록)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·토의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기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정 2002년 8월 29일

개정 2003년 4월 26일

개정 2004년 2월 6일

개정 2005년 10월 28일

개정 2007년 10월 11일

개정 2010년 04월 15일